

## 페미니즘과 남북관계: 북향여성을 중심으로\*

전수미\*\*

### 초 록

북향여성들은 북한과 남한의 체제를 온몸으로 경험한 남북분단의 산 증인이자 아픔이다. 지금까지 북향여성의 이익은 남북분단이라는 이름 아래 남성에 의해 지배당하고 억눌려왔다. 북향여성은 장기간 폭력에 쉽게 노출당해 왔음에도, 남북관계의 현실적 문제들에 부딪쳐 조명받지 못했다. 북한 특유의 남성 중심 가부장적 문화와 남성우월주의가 북향여성들의 의식 기저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향여성이 겪는 문제는 그들의 선택이 아닌 냉전시대의 산물로 원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데에 있다. 냉전체제의 그림자는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국가폭력'이 되어 북향여성을 포함한 모든 북한민들에게 반영되고 그들을 옴아매고 있다.

인간안보를 기초로 한 페미니즘 관점의 시각은 기존의 냉전 체제와 군사주의적 논리를 극복하고 견어낼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이다. 페미니즘 인간안보를 통해 여성의 비안보 문제를 가시화하고 기존의 국가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인간'을 중심으로 안보 개념을 확장할 때, 새로운 남북관계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북향여성, 페미니즘, 인간안보, 국가안보, 국가폭력

\* 이 논문은 북향여성을 지원하며 경험한 국가안보적 시각에 대한 의문을 바탕으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입니다. 본 줄고(拙稿)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여성연구』의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송실대학교 송실평화통일연구원 초빙교수(변호사, 정치학 박사). (sumijeon@ssu.ac.kr)

## I. 서론

“안녕하세요. 저는 1년 넘게 성폭행을 당해온 피해자입니다. 신고까지 많은 고민과 어려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동생이 정치범 수용소 가고 성폭행까지 매일매일 너무 힘들었고, 잠깐이라도 죄책감과 고통스러운 감정을 피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시도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몇 글자로 저의 억울함과 아픈 마음을 설명하기 어렵지만 조금이나마 삶의 의지를 찾고 싶었고, 더 이상 혼자 숨어 울지 않으려고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sup>1)</sup>

2019년 12월 국군정보사령부 간부들에게 1년이 넘도록 성폭행을 당한 한 북향여성<sup>2)</sup>이 ‘미투(me, too)’를 했다. 지금까지 북향여성들은 탈북 후 여정에서, 남한에 정착하면서 수많은 유혹과 자본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북향여성 중 25.2%가 성폭행 피해를 입었거나 성 관련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14). 그러나 그들은 보복 우려나 생계 유지를 위해 그동안 자행되어온 성폭력 피해를 함구해 왔다.<sup>3)</sup>

도대체 왜 북향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지독한 억압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몸과 마음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지 못했을까. 북향여성들은 북한과 남한의 체제를 온몸으로 경험한 남북분단의 산 증인이자 아픔이다. 북향여성의 수난사는 그들이 겪고 있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생겨난다. 우리 사회는 남한 여성과 북한 여성의 차이를 최근에서야 인식하게 되었고, 따라서 북향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 동안 남한의 여성운동은 북향여성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하였다. 일부 북향여성을 지원하는 단체는 여성운동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하며, 북향여성들이 도와달라고 찾아가면 소극적 자세로 임하곤 했다는 진술도 있다(북향여성과의 인터뷰, 2020-2021). 우리는 2019년 한 북향여성의 절규와

1) 2019년 12월 30일 군 정보사령부 탈북여성 성폭행 사건에 대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내용 일부를 발췌하였다.

2) ‘탈북자’의 영문명은 “North Korean Defector”인데, 이 호칭은 “북한에서 탈출한 상태”만을 주목하여 명명된 것이다. 이들을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지 못하고 정치적 상대인 ‘탈출 상태’ 그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어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논의가 있다. 이 점을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 용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순화시키고 ‘북한에 고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뜻인 ‘북향민’, 그 중에서도 본 연구의 주제인 ‘북향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3) 저자는 2020년 12월 30일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 북향여성과 인터뷰를 실시하여 일부 내용을 발췌했다. 이후 관련 내용은 ‘북향여성과의 인터뷰, 2020-2021’로 표시하려 한다.

함께 시작된 미투로 이제야 북향여성의 처절한 경험을 바라보게 되었다. 일부 페미니즘 학자들은 그동안 이 경험을 심도 있게 고찰하지 못하였고, 지금까지 논의된 페미니즘은 남북 체제경쟁과 대립의 역사 전반에서 북한에서 온 여성들까지 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북향여성의 이익은 남성에 의해 남북분단이라는 명분으로 지배당하고 억눌려왔다. 한쪽에서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이유로 북향민 인권이라는 단어가 금기시되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남북 체제경쟁의 수단으로 북향민 인권을 부르짖었다.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의 진보나 퇴보는 어디까지나 ‘남성들만의’ 일이었다. 남북분단과 체제대립의 역사조차 인류 절반의 목소리에만 치중하는 바람에 다른 쪽의 현실이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없었던 것이다. 남성중심적으로 역사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북향여성들의 현실과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북한과 남한에서 여성으로 살다 보면, 수시로 여자들은 열등한 존재로 남성들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고 철저하게 믿는 남성들을 만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삶이 편리한 방향으로 개선되었지만, 남북분단 속에 살아가는 북향여성들이 더 나은 삶을 향유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그들은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삶이 더 악화되기도 하는 모순을 겪는다. 북향여성들은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질수록 남성브로커와 남한 남성들이 가하는 가학적 통제 속에 수많은 모욕과 인권침해를 받아 왔다 (북향여성과의 인터뷰, 2020-2021).

본 연구에서 이론적 질문은 두 가지이다. 첫째, 왜 그동안 페미니즘 논의에서 북향여성이 제외되었던 것일까. 남한의 여성운동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문제이다. 두 번째 질문은 페미니즘 이론을 남북관계에 적용하여 본다면 향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발전하여야 하는가. 우리는 페미니즘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즉 페미니즘을 바탕으로 한 우리들의 역할에 대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향여성을 주 논의 대상으로 삼아 기존의 남북관계를 성찰하고 대안적인 남북관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국가안보 패러다임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인간안보 패러다임을 통해 북향여성의 인권과 남북관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남북관계 연구에서 페미니즘 시각이 필요한 이유

### 1.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에 기반한 안보 논의

현실주의는 국제관계 이론의 주류 중 하나로, 국제정치는 언제나 권력을 추구하는 행위자들 사이의 갈등의 장으로 파악하는 시각이다. 이런 시각은 자유주의라는 협력적인 이상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현실주의는 국가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고 국제시스템은 무정부상태로 이를 조절할 수 있는 행위자가 없으므로 지속적인 적대상태에 있다고 간주한다(Donnelly, 2008:150). 또한 시스템 내에서 단일하고 합리적인 행위자를 상정하고, 국가는 이기심을 추구하며, 모든 주요 관심사가 생존이므로, 국가는 생존을 위해 군대를 구성하여 안보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 본다.

전통적으로 안보문제에 대한 논의는 주로 군사적 영역에서 ‘주권’과 ‘국익’에 대한 위협과 대응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안보개념에 대한 논의는 주로 누구(혹은 무엇)를, 어떤 위협으로부터 어떤 수단으로 보호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Buzan, 1991:433). 전통적 안보라는 관념은 주로 현실주의와 신현실주의에서 논의되어 왔는데, 현실주의자들과 신현실주의자들은 국가와 그 구성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을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안보의 주요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현실주의 학자인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는 국제관계를 국가 간의 힘(power)의 확대를 위한 투쟁으로 인식하고, 군사력이 국력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다른 학자인 케네스 왈츠(Kenneth Waltz)는 안보문제를 국가 간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안보는 국가 간 경쟁을 통해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전통주의적 안보의 입장에서는 아직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으며, 빈곤, AIDS, 환경문제, 국제적인 마약거래 등과 같은 다양한 안보위협 요인이 근본적으로 전쟁의 위협을 없애는 것은 아니므로 안보의 영역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면 오히려 안보 일관성을 잃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조하고 있다(Walt, 1991:213).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안보관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연구들은 안보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이나 구체적인 연구를 통한 대안적인 안보가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Mearsheimer, 1995:82-93), 패트릭 모간(Patrick Morgan)은 안보개념을

“국제적으로 가해지는 물리적 피해로부터의 안전”으로 그 영역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Morgan, 1992:420).

전통적인 안보에 대한 담론은 군사적 대립이 첨예화되었던 냉전시기에 황금기를 맞이하였으며, 남북한도 위와 같은 냉전의 산물로 분단되어 지금까지 분단국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 개념을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안보 환경이나 안보에 대한 위협의 성격, 변화 등의 영향을 받는 유동적인 것으로 본다면, 한반도 문제를 투영하는 안보문제도 탈냉전과 함께 기존의 현실주의적 안보개념에 대한 ‘안보의 새로운 사고(new thinking on security)’가 요구된다. 이미 1980년대부터 리처드 올만(Richard Ullman), 테오도레 모란(Theodore Moran) 등 여러 학자들이 위와 같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바 있다(Ullman, 1983:129-153, Moran, 1990:74-90).

## 2. 페미니즘과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 :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다양한 국제정치이론이 등장하면서 페미니즘은 국제정치학과 결합하였고,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의 한 영역으로서 페미니즘 안보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페미니즘 안보이론은 전통적 국제정치학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론을 재정비 하면서도, 이론에만 치중하지 않고 경험적인 연구로 나아가고 있지만 비판적·대안적 이론의 성향상 분단현실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황영주, 2013:26).

최근에는 안보 개념의 확장, 젠더와 국제관계, 안보에서의 여성과 여성의 경험 고려 등을 연구의 중심 내용으로 파악하면서, 그 연구에 숨어 있는 젠더의 위계질서를 비판하고, 안보연구를 수행할 때 여성과 여성의 경험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황영주, 2013:37). 이들 연구는 기존 국가 중심의 안보를 재구성하고, 구조적 폭력에 대한 불안정성을 폭로하면서 폭력의 상호 연관성을 밝힘으로 인해 드러나는 여성의 희생에 주목한다. 특히, 전쟁과 성차별주의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임을 밝히고 반전 집회뿐만 아니라 성폭력 문제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되었다. 미국에서는 201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학계 안의 세부 분야로 자리 잡고 세미나 등을 진행하는 기조가 갖춰지고 있다(박강성주, 2010:213).

기존의 안보연구는 안보에 대한 남성성과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한 군사적 시각을 바탕으로 국가 및 국가안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군사주의와

폭력이 기존 안보연구의 핵심주제였다면, 페미니스트 안보연구는 안보의 성별 차원에 집중하는 안보연구의 하위분야로서 '젠더 렌즈'를 통해 안보의 다양한 형태와 의미를 연구한다(Carol, 2011:581-586). 즉 국제정치의 군사화나 전쟁, 성별, 인종, 경제 및 권력정치 같은 문제가 세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분석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Feminist security studies(FSS)에서는 전쟁이나 갈등, 조직적 폭력 및 평화와 같은 안보연구 내 확립된 주제를 바탕으로 젠더의 사회적 구성이 제도적이거나 구조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Ken & Steve, 1995).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국가를 보면 젠더위계의 구조적 폭력 즉 여성의 체계적 비안보(불안정)가 드러나지만, 이와 같은 여성의 비안보 문제는 잘 보이지 않거나 여성의 비안보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간주된다. 여성 비안보 문제가 제대로 부각되지 않은 것은 젠더화된 정체성과 이데올로기가 이러한 구조적 폭력을 재생산하고 탈정치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배적인 국제관계학 담론인 현실주의가 남성의 경험, 남성의 세계관, 남성의 언어를 기초로 구성되어 있다는 문제도 있다(심영희, 2005:57-60).

코펜하겐 학파의 배리 부잔(Barry Buzan)은 기존 선행연구에 대하여 냉전의 결과로 인한 안보연구 속에서 조직적 폭력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 있다(Buzan, 2016:25-28). 부잔은, 안보는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정의하고 있다(정국본, 2004:136; Buzan, 1995:144 재인용).

더불어 앤 티커너(J. Ann Tickner)는 평화학이 안보를 물리적, 구조적 생태학적 폭력의 제거라는 측면에서 정의하기에 페미니즘 이론과 양립할 수 있음을 주장(Tickner, 1992)하며 구조적 폭력의 해결을 위한 규범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티커너는 국제관계 이론에서 젠더 문제를 검토하여 남성의 관점에서 인식되고 정의된 시스템 속에서 소외되고 식민지화된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 갈등과 경쟁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고 권력에 기반한 국가 중심의 안보 개념에 집착할 때 생기는 소외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Swerdlow, 1995:161-162). 티커너는 전쟁과 평화에 관하여 여성주의적 접근을 시도하며, 현실주의적 관점과 달리 질서와 정의 사이의 이분법적 사고를 거부한다. 그녀는 전쟁은 보호자와 피보호자 관계를 촉발시키며, 특정한 사람이 남성이라는 젠더를 가진 사람의 보호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여성주의 시각을 통해 국제관계에서의 이미 확립된 지식 구조에 의문을 제기하여 결과적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안전한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Tickner, 1993:269-274).

스파이크 피터슨(V. Spike Peterson)은 조직적 불법행위로부터의 보호라

는 관점에서 구조적 폭력, 여성 비안보를 가시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불법 행위자(Racketeer)는 위협을 창조해놓고 그 감소를 위해 돈을 내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보호자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다. 국가는 보호라는 조직적 불법행위로서 위계와 구조적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구실로 그 위계와 구조적 폭력을 재생산하고 있다고 본다. 국가의 경우, 보호는 맞바꾸기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는 외부전쟁의 위협을 흉내내거나, 자극하거나 심지어 날조한다는 것이다.

피터슨은 다양한 요인을 들어 보호라는 조직적 불법행위의 체계적 비용과 불안정이 효과적으로 신비화된다고 주장한다. 첫째, 보호는 합리적으로 선택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비합리적으로 의존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탈중심화가 피보호자의 집합적 이익을 흐리게 한다. 셋째, 보호체계가 피보호자의 책임성을 흐리게 하면서 비참여적 동태를 재생산한다. 즉 피보호자가 보호자와 동일시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넷째, 협박의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심영희, 2005:65-66 ; Peterson, 1992).

국내에서는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 안보와 그 과제에 대한 논의(황영주, 2007:75-94)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와 페미니즘에 대해 분석한 연구(이정옥, 2017:39-55), 한반도 안보에 대해 젠더화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국제정치학 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연구(전재성, 2002:137-175) 및 인간안보와 여성안보 관점에서 동아시아 여성안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연구 등이 있다. 페미니즘과 안보이론이 기존 국제정치이론의 다양화 속에서 국제정치학의 분과학문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주변적 연구로 치부되고 있다. 그 중 페미니즘 국제정치학과 안보연구는 위에서 열거한 대로 극히 드물며, 수준 또한 이론을 소개하고 국제정치학에 주는 함의를 모색하는 데 그치는 한계가 있다.

한반도는 냉전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남북분단 구조 속에서 현실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관계의 이해와 역할 도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페미니즘 안보연구가 자리잡지 못하였다. 제국주의적 전쟁을 경험한 국가의 경우 폭력 체험에 의한 정체성 형성과 기억이 폭력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범위와 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전쟁의 경험에 따른 사회적 기억은 사회 전반의 평등과 관용을 고무시키기보다는 역압을 정당화하는 규율로 자리잡을 수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전쟁의 기억이 단순한 기억으로 남지 않으며, 한국 사회 내부에서 형성되는 폭력에 대한 규범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이선미, 2005:103-104).

이러한 관점은 남한이 오랫동안 군국주의와 국가라는 조직적 폭력에서 남성이 오랫동안 수행한 역사적인 역할, 안보에 대한 직접적 이해관계자로서 국가

안보 내 북향여성의 목소리가 억제되거나 외면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북향여성에게 대한 남한 공무원의 성폭행을 통해 드러난 북향여성들의 인권유린 실태는 한반도 문제에 국가안보와 남북의 체제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여성에게 가해지는 군사적 안보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한계를 인식하고 젠더의 역할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또한 지금까지 남북관계가 남성 중심, 경제 중심, 기득권 중심이었던 반면 여성이 배제된 채 진행되어 왔기에 북향여성에게 대한 이미지가 더욱 왜곡되어 왔다는 점에서 페미니즘 안보이론을 남북관계에 적용하여 바라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앤 티커너의 여성주의 관점에 입각한 안보론을 바탕으로 북향여성 문제가 남성 중심적 안보 개념과 국가 중심의 국제관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외되고 배제되었는지를 조명하고, 인간안보 측면에서 북향여성 보호와 향후 남북관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북향여성을 주논의 대상으로 삼아 기존의 남북관계를 성찰하고 대안적인 남북관계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 논의를 통해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국가안보 패러다임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인간안보 패러다임을 기초로 북향여성의 인권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 Ⅲ. 페미니즘으로 보는 남북관계 성찰

#### 1. 복합적인 폭력에 노출된 북향여성

##### 1) 국가안보에 기반한 북향민에 대한 국가폭력

냉전체제를 겪으며 남·북은 이데올로기의 대결로 치달았고,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다. 한국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동서냉전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쟁 이후에도 한반도는 동서대결의 장으로서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 지속적인 상호 불신과 대립·갈등 및 경쟁 상태에 있으면서도, 남북공존을 통한 체제유지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남·북한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남북한 특수관계론'을 기반으로 하여 북한을 적이나 화해협력의 동반자로 간주하고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3조, 제4조). 헌법 제3조에 기초한 국가보안법은 북한에 대한 국가안보적 시각과 국가폭력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초헌법적 성격의 법률인 국가보안법의

이데올로기는 반공산주의를 국시로 하여 표현의 자유로 표상되는 집회·결사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를 억압하고 물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한반도 이북지역을 불법점령하고 있는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으로 출국하는 행위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기인한 남한의 대북한 국가안보는 남북관계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남북교류를 제한하거나 남·북한 대화에 대한 자기검열 장치로 작동한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시각은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국가폭력’이 되어 북향여성을 포함한 모든 북향민들에게 반영되고 그들을 옴아매고 있다. 여기에서 ‘국가폭력’은 ‘북향민들이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가정적 상황을 대비하여 국가가 미리 조직한 폭력의 동원체계’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것은 형벌법규로, 때로는 감시 또는 수의적 행정처분의 형태로 다양하게 발현되고 있다.

2014년 북향민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다. 서울시 공무원인 A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A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사실상의 유일한 증거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A의 여동생 B의 진술이었다. 그러나 B는 국정원 직원들이 여동생 B에게 폭행 및 전기고문실로 데려가겠다고 협박하여 A가 밀입북을 했다는 허위진술을 강요받았다고 고백하였다. 이 사건은 사건 당사자가 북한 출신이기에 간첩으로 간주되고 기소되었던 사건이며, 결국 국가가 국가안보에 기반하여 북향민을 ‘이중스파이’로 간주하고 감시하며 국가폭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잔은 안보는 위협으로부터 자유에 대한 추구이며, 존재의 조건에 대한 포괄적 관심영역을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정치영역에서 국내 통합문제와 냉전이후 남북갈등 등을 안보문제로 제시하고 있다.(부잔, 1991:433,439) 국가안보 관념이 국가의 물리력 사용을 중심으로 추구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안보 문제를 개인이나 사회의 범위로 확대되었고, 이 맥락에서 국내에 입국한 국정원 단계부터 자행되는 북향민에 대한 국가폭력을 사회적으로 인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신변보호담당관 제도는 2019. 1. 15. 법령에 근거가 명시되었지만, 실제 운영되는 바를 살펴보면 그 성격이 신변의 ‘보호’가 아니라 북향민이 잠재적 범죄자임을 전제로 하는 ‘감시’ 성격의 보안처분과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북한은 남한을 무력으로 해방시키거나 남한에 친북정권을 수립하여 북한 주도 통일을 실현하려는 정책기조 아래 대남정책을 추진하였다. 남한도 이에 대응하여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거나 북향민을 국정

원과 보안과 경찰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게 하고 있다. 국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북한민을 '잠재적 체제전복자'로 간주하고 관리·감독한다는 점은, 국가가 북한민 입국 이후단계부터 국정원 조사와 경찰감독이라는 미리 조직된 국가폭력의 시스템을 동원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기존에 국가안보 시각으로 북한민을 바라보고 관리해왔던 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자각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나아가 남북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개선하기 위해 포용적이고 포괄적인 안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것이다.

## 2) 북한여성에게 투영되는 국가폭력

북향 여성들이 국내에 입국하면 3개월 동안 국정원 북한민보호센터라는 임시보호센터에서 본인의 신분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 조사 후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훈련을 받고 나와 처음 만나는 남한 사람이 바로 군인이거나 신변보호담당관이다. 본인이 북한에서 하던 업무의 성격에 따라 신변보호담당관만 배정되거나, 군인들까지 접촉하게 된다.

남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평생 국정원 직원을 만날 일도, 국정원이 관찰하는 기관에서 3개월에서 8개월까지 간헐 조사를 받지도 않는다. 무엇보다 경찰이 나의 하루하루를 감시하고 보고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북향 여성들은 남한에 입국하자마자 국정원에 간헐 조사를 받고 하나원 교육 후에는 신변보호담당관이 배정되어 보호라는 이름 아래 감시를 당하게 되는 것일까.

이는 일제강점기가 종료되고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는 역사의 비극이 여성에게 투영되면서 시작되었다. 북한이 해방 후 법제정을 통해 여성이 사회주의 건설에 동원된 것도, 그러면서도 가부장적 체제 아래 아이를 돌보고 남성을 보조하는 지위를 강조한 것도 모두 여성해방이 아닌 또 하나의 혁명을 위한 도구이자 꽃이길 바랐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한반도 내 누가 합법적인 정부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인정투쟁이 극한으로 치달았고, 체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도구가 필요했다. 남북한의 인정투쟁 속에서 북한 여성은 북한에서는 혁명화의 꽃으로 활용되고, 남한에서는 대북공작이나 북한 관련 정보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북향 여성은 남북한 체제경쟁과 분단의 최대 희생자가 되고 만 것이다. 이는 앤 티커너가 그토록 경계했던 남성중심적 사고에 기반한 체제 경쟁시스템이 국가안보에 집착하면서 발생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북한여성에 대한 폭력은 장기간 존재하였으나 남북관계의 현실문제에 부딪쳐 조명받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부각되고 있다. 국가폭력으로 희생되어 온 이들의 목소리가 누적되어 오다 오늘에서야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입국 북한민 3만 3,658명 중 여성이 2만 4,256명으로 전체의 72.1%를 차지하는데,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자료”에서는 한국에 정착한 북한민 여성들이 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음을 밝히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11-17). 최근에는 탈북여성 미투 운동이 시작되면서 북한민 신변 보호를 맡고 있던 현직 경찰 간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간부, 북한민 단체 대표 등 최근 탈북여성을 성폭행한 사건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국가가 북한여성들을 ‘보호’라는 이름으로 관리하고 감시하는 국가폭력 뿐만 아니라 ‘성폭행’이라는 국가폭력까지 용인하거나 묵인했음을 보여준다.

결국, 간첩색출과 신변보호를 명목으로 국가는 북한여성을 정보수집 대상으로 간주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국가공무원이 자행하는 성폭행을 묵인하며 피해여성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연합뉴스, 2021.6.2). 북한여성들은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라나 남한과 가치관, 사회문화 등에 익숙하지 않다. 특히 남북한은 분단 70여 년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는데, 그 중 북한여성들을 어렵게 하는 것은 언어 차이와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겪는 차별과 멸시이다(북한여성과의 인터뷰, 2020-2021).

위와 같은 관계 부처의 태도는 국가기관이 북한의 침략에 방어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국토를 방어한다는 국가안보론을 바탕으로 북한민을 감시하는 입장에서 서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안보는 단순히 군사력과 체제경쟁에 의존하는 안보 관련 부처에서 담당하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민들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제반영역에서의 정책이 포괄적으로 작용해야만 달성될 수 있는 하나의 사회 구조물에 가깝다.

또한 북한 특유의 남성 중심 가부장적 문화와 남성우월주의가 북한여성들의 의식의 기저에 작동하고 있는 문제까지 있다.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북한 사회의 행태는 혁명의 그림자처럼 존속하였고, 여성은 남성에게 강간을 당하면 ‘잡아먹혔다’라는 인식하에 그런 수치스럽고 망신스러운 일을 숨겨야 살아갈 수 있었다(북한여성과의 인터뷰, 2020-2021). 무엇보다 북한에서 인권의 본질에 대한 교육이 없어 여성의 인권이 무엇인지, 본인이 어떠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도 없다.<sup>4)</sup>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지금까지 남한은

4) 2011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북한이탈주민 법의식 사례연구”에 따르면 ‘북한에서 인권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대답이 27%, ‘인권은 미국이나

군사주의와 남성중심주의적 사고 및 북한 특유의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문화에 대한 인지를 바탕으로 북향여성들을 대하고 국가폭력을 가해왔으며, 북향여성들이 부당한 요구나 성폭행에 항의하면 “넌 돈을 요구하는 꽃뱀이나. 조국의 배신자와 변절자(북한에 대한)는 조용히 살아라”는 식으로 침묵을 강요해 온 (북향여성과의 인터뷰, 2020-2021) 고질적 문제가 있었다.

### 3) 북향여성에게 투영되는 남성폭력

남한에 입국한 북향 여성은 고향을 버리고 왔다는 죄책감과 여기서도 정착하지 못하면 끝이라는 심리적 위축 상태에서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여성의 몸에 대해 부정적인 문화가 형성된 북한을 잘 알고 있는 남한의 군인과 경찰, 동향 남성들은 피해를 당해도 망신스러움에 신고하지 못하는 북향 여성에게 성적 유린을 망설이지 않는다.

북향 여성이 성적 착취나 유린을 당하고 항의하면 가해자들과 남성들은 피해자인 여성의 탓으로 몰고 가 “여자가 행실을 어떻게 했길래”, “몸이 더럽혀진 여자가 어딜 다니느냐”, “왜 치마를 입어서 그런 일을 당하냐”라며 여성의 행실과 부덕함의 소치로 치부한다(북향여성과의 인터뷰, 2020-2021).

일부 북한 남성들은 북한 여성을 가지고 싶으면 우선 몸부터 가지면 된다는 생각으로 동향여성들을 강간하기도 한다. 최근 벌어진 동향 북한여성 성폭행 후 월북사건, 성폭행을 당한 후 탈북단체장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하러 갔다가 오히려 다시 성폭력을 당한 북향 여성 사건, 자기 뒤에 남한 국회의원이나 미국 대통령이 있는 힘 센 사람임을 강조하며 북한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어린 북한여성들을 강간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하며 성 착취와 성 접대를 시키는 일부 북향 남성들은 북향 여자를 정복의 대상이자 남자보다 열등하고 힘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추단하기에 충분하다.

업무로 북한 여성들을 만나는 군인들이나 신변보호담당관인 경찰들은 보호라는 이름으로 만나거나 집으로 찾아가고 혈혈단신의 몸으로 남한에 온 북향여성들을 겁탈했다. 북한에서 군인이나 형사가 일반 인민들에게 얼마나 힘 있고 무서운 존재인지 아는 일부 북향 여성들은 남한의 군인과 경찰을 북한과 같다고 생각하며 이들에게 복종하고 두려워한다. 북향 여성들은 성폭행을 당해도 자리에서 도망치거나 그냥 당하고 있거나 무조건 빌고 애원할 뿐 저항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드물다. 성폭행이 실제로 처벌받는다고 생각하지

---

남조선에서 북조선을 비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다'에 대답이 16.2%임을 알 수 있다. 전체의 43%가 인권에 대해 들어본 적 없거나 잘못 인식하고 있다.

도 않는데다가 힘 있는 사람들을 신고했다가 남자들에게 보복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북향여성에게 남성폭력이라는 형태로 국가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언어의 문제도 발생한다. 피해 북향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남한 용어 중 상당수가 한자어나 외래어로 되어 있어 같은 조선어라도 50% 이상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한다. 북향 여성들은 일반 남한 언어표현에 대한 이해나 표현능력이 남한 사람들보다 현저히 부족하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사실상 불이익한 처우, 특히 신분 노출이라는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가해자들은 상대방이 자신보다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열등하다는 생각으로 북향 여성을 정복하고 파괴하는 폭력을 자행하며, 이는 북한이라는 존재 자체를 파괴하고 정복하며 남한이 북한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전쟁의 현상이 되기도 한다. 일부 남성들이 가진 북향여성들이 말을 잘 듣고, 적은 비용으로 데리고 살기 좋으며, 남한의 맛을 보여준다는 명목으로 이들에게 성 착취를 하는 행태가 이를 잘 보여준다(북향여성과의 인터뷰, 2020-2021). 티커너가 문제를 제기한 남성의 관점에서, 북향여성은 남성들이 자행하는 폭력에 의해 남한의 체제 우월성을 재확인시켜주는 도구로 희생되고 파괴되며 버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티커너에 따르면 남한의 남성 중심 시스템 속에서 북한과 북향여성을 바라보는 남한 남성들의 시선이 강자이자 내부 식민지를 바라보는 제국주의자로 변모할 수 있으며, 이 또한 남한 남자들이 남한 사람의 지위에서 자행하는 구조적 국가폭력이라 할 수 있다. 북향여성들이 느끼는 수치심은 피해를 입은 북향여성들이 침묵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가시적 폭력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피해 북향여성들은 스스로에게 굴레를 씌우고 자살하거나 침묵 속에 살아간다.

## 2. 페미니즘과 인간안보

북향 여성 인권 문제는 우리에게서 민족의 문제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인도주의적, 인류보편적 문제이기도 하다. 1948년 12월 10일 채택된 「UN세계인권선언문」은 모든 사람과 장소에 인권과 근본적 자유가 적용된다는 내용을 세계 최초로 확인한 것이라 의미가 있다. 이는 국제법상 강행규정으로 국제인권법 발전에 기여하였는데, 위 선언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

엄하며, 평등하며,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하며(제1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제2조).

1990년대부터 시작된 남한의 진보적 여성운동은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여러 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하고 군 위안부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베이징 등 세계 각지에서 토론의 장을 열었다. 이는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에서 남북이 공동기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큰 결실을 맺었다. 2000년 10월 3일 북조선로동당 창립 55주년 기념식에 13개 정당과 사회단체가 참여하였는데,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유일하게 초청받아 북한을 방문하였고 이는 2001년 남북여성통일토론회, 2002년 '6.15. 공동선언 실천과 평화를 위한 남북여성토론회'로 연계된다.<sup>5)</sup>

남한과 북한 여성의 만남 속에서도, 남한 내 북향여성이 겪는 인권문제는 여전히 외면받았다. 북향 여성이 겪는 문제는 그들이 선택이 아닌 냉전시대의 산물로서 원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데에 있다. 남북한 교류가 지속되었지만 전체 교류협력 중 여성 교류의 비율은 미미하다. 북한에서 온 여성들은 사회적 혁명가이자 자상한 어머니, 순종적인 며느리, 헌신적인 주부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아 살아왔다. 여성은 조선의 전통문화에 맞게 '조선치마저고리'를 입는 게 좋겠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교시 후, 모든 여성들이 치마저고리를 착용하게 된 모습에서 우리는 북한 당국이 북한여성들의 사적 공간을 종속시키는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 즉 국가가 여성이라는 대상에 대해 적극 개입함으로써 북한여성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이 대단히 약화되었으며, 이는 이들의 남한 정착에도 큰 악영향을 미쳐왔다.

그러하기에, 이제 우리는 남한과 북한 여성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되는 페미니즘이 필요하다. 그 대안은 바로 '인간안보'에 바탕을 둔 페미니즘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생명과 자유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며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인류도 역사적 경험을 통해 전쟁이나 군사적 위협만이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이 문제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개념화하여 다루게 된 건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 인간안보 개념은 여기서 비롯되었다. 인간안보는 '인간을 생명과 자유, 안전한 생활에 대하여 위협이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United Nations Development

5)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원홍 외(2020) 참조.

Programme, 1994:23). 인간안보는 그 동안 안보의 개념을 ‘국가 중심’으로 논의해 왔던 기존 담론에서 벗어나 국가가 아닌 ‘인간’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개념이다.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Report (1994)는 인간안보는 국가가 아닌 인간을 중심으로 하므로 국경을 초월하며, 상호의존성과 사전예방적 특징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1994:21-23).

지금까지 북향여성들은 남한과 체제경쟁 중이자 전쟁 중인 ‘반국가단체’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일을 겪어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침묵을 강요받으며 살아왔다. 남한사회에서 통용되는 북한과 북향여성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걷어내고, 여성들은 우리 안에 자리잡은 ‘군사주의’에서 벗어나 인간 자체를 중시하는 인간안보 패러다임으로 북향여성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고향이 남과 북 어디인지와 관계없이 인간안보적 관점에서 인간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인류 보편적 가치 속에서 북향여성을 바라볼 때, 기존의 반공 이데올로기 속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북향여성에게 투영되어 행해지는 국가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IV. 페미니즘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방향

### 1. 북한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정치적 공세화 중단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과 2020년 대북전단법 제정 과정에서 여야가 크게 충돌했다. 북한인권 관련 법안은 2004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명, 2005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배경을 바탕으로 하며, 국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북한인권법안은 2005년부터 11년간 발의와 폐지를 반복하다가 결국 2016년에 제19대 국회의 발의안 11개를 통합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제정되었다. 당사자국인 한국은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2006년 일본의 북한인권법보다도 제정이 상대적으로 늦었는데, 그 배경에는 북한인권이라는 이슈에 좌·우 진영논리가 반영되면서 민주당이 북한과의 관계 - 대화와 소통을 이유로 북한인권을 거론하는 것을 꺼린 반면, 새누리당은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있으므로 주적국가의 만행을 적극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국회가 2020년 12월 의결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보수

진영에서 ‘김여정 하명법’으로도 불리는데, 2020년 6월 4일 김여정 북한 제1 부부장의 담화를 시작으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비난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후 취한 조치라는 이유 때문이다. 결국 통일부는 2014년 북한의 전단살포 대응 고사총 사격에 따른 우발적 충돌위험과 남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을 이유로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일반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는 진영은 인권·노동·복지를 중점으로,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진영은 경제·안보에 중점을 둔다. 남북분단 상황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진영 중 일부는 북한을 화해·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보다 나은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교류 추진을 위해 탈북한 북한민들의 목소리를 상대적으로 불편해하기도 하였다. 북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면 정작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하는 순간 북한이 거부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 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진영은 북한인권과 북한민 인권에 대해 진심인가. 북향여성들이 동향 북향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거나 피해사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같은 북한사람끼리의 일이고, 정치적으로 진보진영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기에 북향여성들의 인권유린에 침묵하는 모습을 보인다. 남성 중심적 안보관을 기초로 북한체제를 부정하고 비난하는 일부 북향남성들만 조명하고, 북향여성은 북한민 사회에서도 격리된 계층이자 새로운 하위계층으로 전락된다.

우리는 티커너의 페미니즘 안보의 시각을 바탕으로 할 때 기존 국가안보 관점에서 북향민들을 바라보고 통제하는 남성중심적 인식과 안보정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가중심의 안보와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탈피하고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중시하는 ‘인간안보’를 바탕으로 북향 여성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남한사회는 그동안 편의에 의해 선택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만을 반영한 ‘선택적 정의’를 버리고 남북 분단의 현실 속에서 새로운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북향여성의 목소리를 수면 위로 비상시켜야 한다.

북향여성의 인권을 편의와 정파성에 따라 활용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고, 정치적 무계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북향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선별적 태도를 보이는 것도 대한민국에서 미투가 여성의 인권이 아닌 정치적 영역임을 보여준다. 페미니즘을 기화로 ‘인권의 정치적 공세화’를 중단하고 남한 내 북한여성 지원을 통해 남북한 전체에 ‘인간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여야 한다.

## 2. 남한 일방의 시각으로 북한과 북향여성에 대한 재단 지양

지금까지는 미비하게나마 남북여성 교류를 통해 남한 내 북향여성들이 서로를 알고 차이를 인식하며 이해하는 기회를 가져왔다. 이제 남한에서 때 명절마다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거나 남한의 정착이 너무 힘들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이들을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북한 특유의 집단문화, 고난의 행군과 대북제재 시기를 거치면서 인간으로서 향유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해결되지 못한 채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온 북향여성들을 남한 일방의 시각으로 재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현재 남한에서는 지역감정이 소멸하고 있고, 다문화에도 조금씩 열린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남북분단과 남북한 특수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북한과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정치적 도구나 체제경쟁의 산물로 취급당하고, 통일의 마중물이라는 이름으로 장차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역할까지 부여받고 있다. 이런 시각은 북향민들이 남한 사회의 차별과 정착을 위한 투쟁만으로도 버거워하는 점에서 그들의 진의를 감안하지 못한 ‘남한 중심적 사고’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간안보를 바탕으로 하는 당사자인 북향여성들과 남한여성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페미니즘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절실하다.

남한에도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까지 ‘북한이탈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남한 일반여성과 차이를 두고 지원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남한 여성들 사이에서 북향 여성을 있는 본연의 모습 그대로 이해하여 단지 고향이 다른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함께하여야 한다. 남한여성과 북향여성으로 구분하는 순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차이와 차별이 생기며, 그어져 버린 선으로 인해 북향여성들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평생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북향여성이 지닌 이질적 요소 중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켜 남한과 북한의 여성들 각자가 지닌 정체성 속에서 남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북향여성을 남한 일방의 시각으로 재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솔직함이나 활발함, 사회적 생산참여에 대한 자긍심이나 지역공동체에서의 헌신과 같은 긍정적인 요소를 인정하고 찬사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남북 여성이 서로를 인정하면 ‘남한 사회로의 일방적 동화’라는 이름으로 북향여성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비가시적 폭력을 지양할 수 있고,

나아가 그들의 고향인 ‘북한’도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서로의 왜곡된 이미지를 상쇄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리는 남·북한 여성들의 대등한 만남을 준비할 수 있고, 기존의 남성 중심·경제 중심·기득권 중심의 교류에서 벗어나 새로운 남북교류를 도모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신뢰 프로세스 등 ‘남한 중심적 시각’에서 만들어진 대북정책의 방향에서 벗어나 ‘북한의 입장이 반영된’ 남북관계를 지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3.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페미니즘

페미니즘은 근대 민족주의 담론에서 여성이 배제되거나 남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통합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특히 ‘상상의 공동체’로서 민족주의가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며, 국가가 ‘숙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성들은 처음으로 ‘국민’이 만들어지는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정현백, 2001:9-10).

발리바르(Étienne Balibar)는 민족은 “정치적 제도로서의 국가에 앞서있는(in advance), 국가에 자신의 정치적 동기를 기입하는(inscribe) 인민 공동체의 상상계(the Imaginary)”로 정의하였고, 이 상상계의 내용은 언어와 인종으로 정의되는 의사적 종족성(fictive ethnicity)에 의해 규정된다(Balibar, 1991). 이러한 개념화는 민족-국가 안에 내재되어 있는 민족(nation)과 국가 간 관계, 즉 국가는 민족의 정치적 동기를 구현해야 마땅하다는 믿음, 또는 정치적 단위와 민족적 단위가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적 원리(Gellner, 2006:1-7)를 파생시킨다.

즉, 민족주의는 민족-국가문화적, 인종적, 종족적 단위로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민족과 그것의 정치적 목표를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국가 제도로 구분되고, 근대 이후 민족-국가 형태의 정치공동체 사유 양식이 전 세계적으로 당연한 것, 일종의 헤게모니로 받아들이면서 나타난 다양한 정치운동-범민족주의, 민족해방운동, 분리주의, 민족국가 간 전쟁, 그리고 반정부시위<sup>6)</sup>- 역시 민족주의 정치운동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수차례 진행되어 온 남북정상회담은 민족해방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어 온 역사를 바탕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언술과 함께 남한 사회 내 민족주의 이념을 고양시켜 왔다. 분단 70여 년 동안 심화된 남북의 이질성

6) “국민의 이름으로 정부를 심판한다.”라는 언술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을 해소하기 위해 ‘한민족’임을 강조하며 혈통적 민족주의나 문화적 민족주의를 강조해 왔지만, 이 거대담론 앞에서 북한에서 온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외면받아 온 문제가 있다.

북향남성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향여성들에 대한 성착취와 성폭력을 늘 탈북민 탄압으로 상징화시키면서 피해자 북향여성들의 인권이나 성차별문제가 논의 핵심에서 배제되었다. 물론 북향여성들에게 현재까지의 페미니즘 논의는 지엽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남북한의 여성은 남성에게 공동의 억압을 받고 있지만, 억압의 내용은 서로 동일하지 않고 북향여성들은 남한사회에서 정착하는 것만으로도 버겁기 때문에,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정착’이라는 전쟁에서 페미니즘은 결길로 나간 싸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민족주의 담론은 분단이라는 비극적 현실을 극복하는 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북향민의 76%가 여성임에도 이들을 외면하고 도외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민족국가에서 북향여성이 배제되는 방식은 한국의 페미니즘 운동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 동안 페미니즘 운동에서 북향여성은 보이지 않았으며, 여성가족부나 통일부에서 북향여성의 참여는 거의 전무하다.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북포용정책이 진행된다면 사회·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과정에서 다시 북향여성이 소외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북한동포돕기운동이 활발해졌다고 해도 민간교류는 거의 남성 위주로 이루어졌고, 여성에게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으로 주어졌다. 물론 여기에서도 북향여성들의 참여기회는 없었으며, 민족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북향여성의 배제를 재확인하게 된다. 향후 페미니즘 논의나 여성정책에서는 남북한 성평등적 관점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남북교류과정에서도 남북 쌍방 간에 북향여성을 비롯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4.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성의 참여

한반도는 분단국가이다. 군사주의가 이 분단현실을 유지시키고 강화하는 핵심으로 작동하고 있고, 분단 상황에서 징병 문제와 결합하여 성역할이 강제로 고정되고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페미니즘의 실천이 필요하다(김엘리, 2019:169). 무엇보다 한반도 안보상황은 서구 제국주의 논리 등을 역오리엔탈리즘적 시각에서 수용하여 더욱 강화된 일본의 제국주의 논리와 군사주의 논리, 탈냉전기 패권적 군사·안보 논리에 물들어 있다

는 문제가 있다(전재성, 2002:169). 여성성은 여성의 선천적 본성이 아니라 여자가 태어난 다음, 가부장적 사회의 문화적 기제들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신옥희, 2009:105-112), 이렇게 사회에서 부여한 여성성의 증가로 인한 안보환경 완화가 남성적 논리를 중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필요하다(전재성, 2002:171-172).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경쟁은 일부 남성의 정치적 경험을 일반화한 것이고 상대방의 군사적 능력을 과대평가하여 군비경쟁에 정당성을 부여한다(황영주, 2013:46). 군대가 젠더화된 공간으로 성역할을 구분하고 내 집단에 대한 순수성을 지키려는 배타성을 함께 배우고 재생산된다는 점과, 분단체제 아래에서 징병제를 통해 이런 사고방식이 재생산되고 사회로 다시 확산된다는 문제점이 있다(여성신문, 2020.8.29).

이로 인해 기존 페미니즘 운동에서는 성별의 이분법과 군대가 서로를 유지·강화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일상에서 강요되는 지정 성별을 거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징병제가 ‘정상’과 ‘비정상’ 경계짓기를 통해 끊임없이 1등 시민과 2등 시민 혹은 국민과 비국민을 양산하는 방식으로 이분법적 사회 위계를 견고히 해온 데 문제를 제기하는 선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일다, 2020.6.8). 동독의 통일 이후 많은 동독 여성들이 실업자가 되는 등 배제당한 경험을 보며 평화운동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비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정현백, 2014:224).

페미니즘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전시 성폭력 외에도 여성이 분단이라는 화약고 상태에서 계속 입어 온 피해를 회복하고 사회 안에서 제대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설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성이 평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통일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헌법 제4조 참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므로 국가가 적극적 이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헌법 제6조 제1항).

또한 남북이 평화와 통일의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식민지배 피해 등 공통된 당사자성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한 연대와 국제적 활동, 교류 등을 통해 남북간 공감대와 공통의 경험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남한의 법령이 북한에 적용될 때의 혼란에 대비하여 법을 바로 적용하는 외에도 다양한 행정지도와 인식구조 개선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냉전과 군사주의적 논리, 남성중심적 시각을 극복하고 견어낸다는 점에서 우리안의 ‘군사주의’를 문제삼고 적극적 주체로 전환함과 동시에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평화운동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간안보에 기초한 페미니즘의 시각과 반전의식 강화 및 여성의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찾기를 도모하여야 하는 것이다. 페미니즘 인간안보를 통해 기존의 적대적 군사대결 구조를 완화하고, 기존의 남성적·가부장적 문화를 극복하여 북한 사회의 재생과 인식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 모두의 상생을 기대할 수 있다.

## V. 마무리하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한반도는 70년의 분단 동안 한국전쟁을 거친 화약고 상태로 서로 분노하고 원망하며 서로의 체제를 부정하고, 상대 체제에서 온 사람들은 각 진영 논리에 맞춰 이용당해왔다. 북향여성들은 그 진영논리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살아왔다.

여성과 아동은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북향여성은 아직도 정전이 이뤄지지 않은 한반도에서 남한 내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정원, 하나원, 신변보호시스템이라는 국가기구의 조직적 틀 속에서 관리되고 감시받으며 통제당하고 있다. 남한의 ‘안보’관을 기초로 구성된 국정원 조사, 하나원에서의 강제 교육, 신변보호담당관 배정 과정은 국가가 북향여성을 ‘잠재적 안보 위협자’로 간주하고 감시·통제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인간안보를 기초로 한 페미니즘의 시각은 위와 같은 기존의 냉전 체제와 군사주의적 논리를 극복하고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페미니즘 인간안보를 통해 여성의 비안보 문제를 가시화하고 ‘국가 중심’으로 논의해 온 기존 담론에서 벗어나, ‘인간’을 중심으로 안보 개념을 확장하면 새로운 남북관계에 대한 구상도 가능할 것이다.

한반도는 냉전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남북분단 상황에 놓여 있다. 안보 담론은 이 상황에서 현실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관계의 이해와 역할도 도모하는 데 집중하여 여성의 기본적 인권 문제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국가안보와 남북의 체제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북향여성에게 가해지는 군사안보와 남성 중심 헤게모니의 한계를 인식하고 페미니즘 인간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 과정은 기존에 정치적으로만 논의되던 남북관계를 ‘인류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발전의 장을 열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엘리(2019). “탈분단시대, 페미니즘 평화교육”. TEPI. 1-7.
- 김원홍 외(2020). “남북여성교류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강성주(2010). “여성주의 안보연구 시론”. 여성과 평화. 제5호. 201-224.
- 배리 부잔(1995). 세계화 시대의 국가안보. 김태현(역). 서울: 나남출판.
- 성정현·조성희·신은주(2017).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신옥희(2009). “타자(他者)에서 주체(主体)로”. 한국여성철학 제11권. 105-142.
- 심영희(2005). “여성에게 안보란 무엇인가?”. 여성과 평화. 제4호. 51-79.
- 이선미(2005). “근대 국민국가와 여성의 안보”. 여성과 평화. 제4호. 84-109.
- 이정옥(2017).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와 글로벌 페미니즘”. 사회과학논총. 제16권. 39-55.
- 전재성(2002). “한반도 안보에 대한 젠더화된 관점에서의 접근”. 아시아여성연구. 제41호. 137-175.
- 정현백(2001). “민족주의와 페미니즘 비교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제1권. 9-52.
- \_\_\_\_\_(2014). “국가와 여성평화운동 - 김대중노무현정부의 평화정치를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제20호. 214-250.
- 정국본(2004). “안보논단 2 : 지역안보복합체[regional security complex]의 이해 - Barry Buzan의 안보 이론을 중심으로-”. 전략논단. 제1권. 131-150.
- 황영주(2007). “만나기, 뛰어넘기, 새로만들기: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 안보와 그 과제”. 국제정치논총. 제47권 제1호. 75-94.
- \_\_\_\_\_(2013). “페미니즘 안보연구의 기원, 주장 그리고 분석”. 세계정치. 제19호. 21-53.
- Swerdlow, A.(1995). Engendering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he Feminist Standpoint. *Journal of Women's History*, 7, 160-163.
- Balibar, E.(1991). The Nation Form: History and Ideology. *Review*, 13, 329-361.
- Buzan, B.(1991). New Patterns of Global Secur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ternational Affairs*, 67, 431-451.

- \_\_\_\_\_(2016). Rethinking Security after the Cold War. *Cooperation and Conflict*, 32, 5-28.
- Ken, B. & Steve, S.(1995).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oday*. Cambridge: Polity Press.
- Carol, C.(2011). Feminist Security Studies: Toward a Reflexive Practice. *Politics & Gender*, 7, 581-586.
- Donnelly, J.(2008). *The Ethics of Realism. The Oxford Handbook of International Relations*. Landon:Oxford University Press.
- Gellner, E.(2006). *Nations and Nationalism*. Malden. MA ; Oxford : Blackwell.
- Ken, B. & Steve, S.(1995).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oday*. Cambridge: Polity Press.
- Mearsheimer, J.(1995). A Realist Reply. *International Security*, 20, 82-93.
- Morgan, P.(1992). Safeguarding Security Studies, *Arms Control*, 13, 464-479.
- Peterson, V. S.(1992). *Gendered States: Feminist (Re)vision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Boulder: Lynne Rienner.
- Tickner, J. A.(1992). *Gend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 Feminist Perspectives on Achieving Global Security*. Columbia: Columbia University Press.
- \_\_\_\_\_(1993). Feminist Approaches to Issues of War and Peace. *Studies of Transnational Legal Policy*, 25, 267-283.
- Ullman, R.(1983). Redefining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8, 129-153.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1994).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alt, S. M.(1991). The Renaissance of Security Studi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5, 211-239.
- 여성신문(2020. 8. 29.). “[인터뷰] 김엘리 평화페미니즘연구소 소장 “분단 자체를 들여다 보자””.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25>에서 2021. 2. 25. 인출.
- 연합뉴스(2021. 6 .2.). “김철, ‘탈북 여성 성폭행’ 의혹 경찰관 불기소 처분.”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7028700004>에서 2021. 6. 3. 인출.

일다(2020. 6. 8.). “여성들의 병역, ‘거부’와 ‘복무’ 사이 - 페미니즘과 군대 그리고 여군의 위치를 고민하다”. <http://www.ildaro.com/8751>에서 2021. 2. 25. 인출.

Abstract

## Feminism and Inter-Korean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 Focusing on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Su-mi Jeon\*

North Korean women defectors are living witnesses and pain in the division of the two Koreas who have experienced the regime of North and South Korea with their whole bodies. So far, the interests of North Korean women defectors have been dominated and suppressed by men under the name of the division of the two Koreas. Violence against North Korean women defectors has existed for a long time, but has not been illuminated in the reality of the division of the two Koreas. This is because North Korea's unique male-centered patriarchal culture and male supremacy are working as the basis for the consciousness of North Korean women defectors. The problem facing women in the north lies not in their choice, but in their unwanted lives as a product of the Cold War. The remnants of the Cold War system are projected on all North Koreans, including North Korean women defectors, in the form of "national violence" under the pretext of "national security."

Feminist views based on human security are required in terms of overcoming and removing the existing Cold War system and militarist logic. By visualizing women's non-security issues through feminism's human security and expanding the concept of security around "humans," not countries, will be able to promote new inter-Korean relations.

**Keywords :** North Korean women defector, Feminism, Human security, National security, National violence

---

\* Visiting Professor, Soongsil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oongsil University(attorney at law, Ph.D. in Political Science).